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8
----------	-----

발의년월일 : 2000. 10. 26.
 발의자 : 전준호 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안산시의 실·과·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00. 10. 20. 조례 제936호)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 및 사업소 명칭을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보완하며
-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의회·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자치홍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실”로 하고,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기타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중 “기업지원센타”를 “기업지원센터”로 함(안 제3조)
-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상임위원회의 소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 중 “자치홍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실”로 하여 다목을 라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중 “기업지원센타”를 “기업지원센터”로 한다.

가.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 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1. 의회·행정위원회 (신설)	1. <u>가.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기타 의회</u> <u>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u>
가.(생략)	나.(현행 가목과 같음)
나.(생략)	다.(현행 나목과 같음)
다. <u>자치홍보담당관</u> , 관산도서관,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대부출장소,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u>감사담당관실</u>
2. 경제·사회위원회	2.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보건소, <u>기업지원센타</u> ,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농업기술보급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기업지원센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③(생략)	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u>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u> <u>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u>
(신설)	⑤ <u>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u>
④(생략)	⑥(현행 제4항과 같음)
⑤(생략)	⑦(현행 제5항과 같음)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현황

위원회별	실·국·소	실·과·소·동
의회·행정 위 원 회	의회사무국	-
	-	·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4담당관실, 2소)	·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행정지원국 (6과, 1소, 21동)	·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시세과, 도세과, 재무과 · 대부출장소, 21개동사무소
경제·사회 위 원 회	경제복지국 (5과, 3소)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사회여성과, 위생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농업기술보급소
	보건소	-
	기업지원센터 (3과)	·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기업민원과
도시·건설 위 원 회	도시계획국 (4과)	·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건축과, 지적과
	환경건설국 (4과, 3소)	·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과 ·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4과)	· 업무과, 수도시설과, 정수1과, 정수2과
	환경사업소 (2과)	· 하수행정과, 하수처리과

第6節 委員會

第50條 (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查·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特定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查·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51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特定한 案件을 審查한다.

第52條 (委員會에서의 傍聽等) ①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3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중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54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7節 會 議

第55條 (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會議中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56條 (議決定足數) ①議事는 이 法에 特別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7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8條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분의 1이상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改正 89·12·30>